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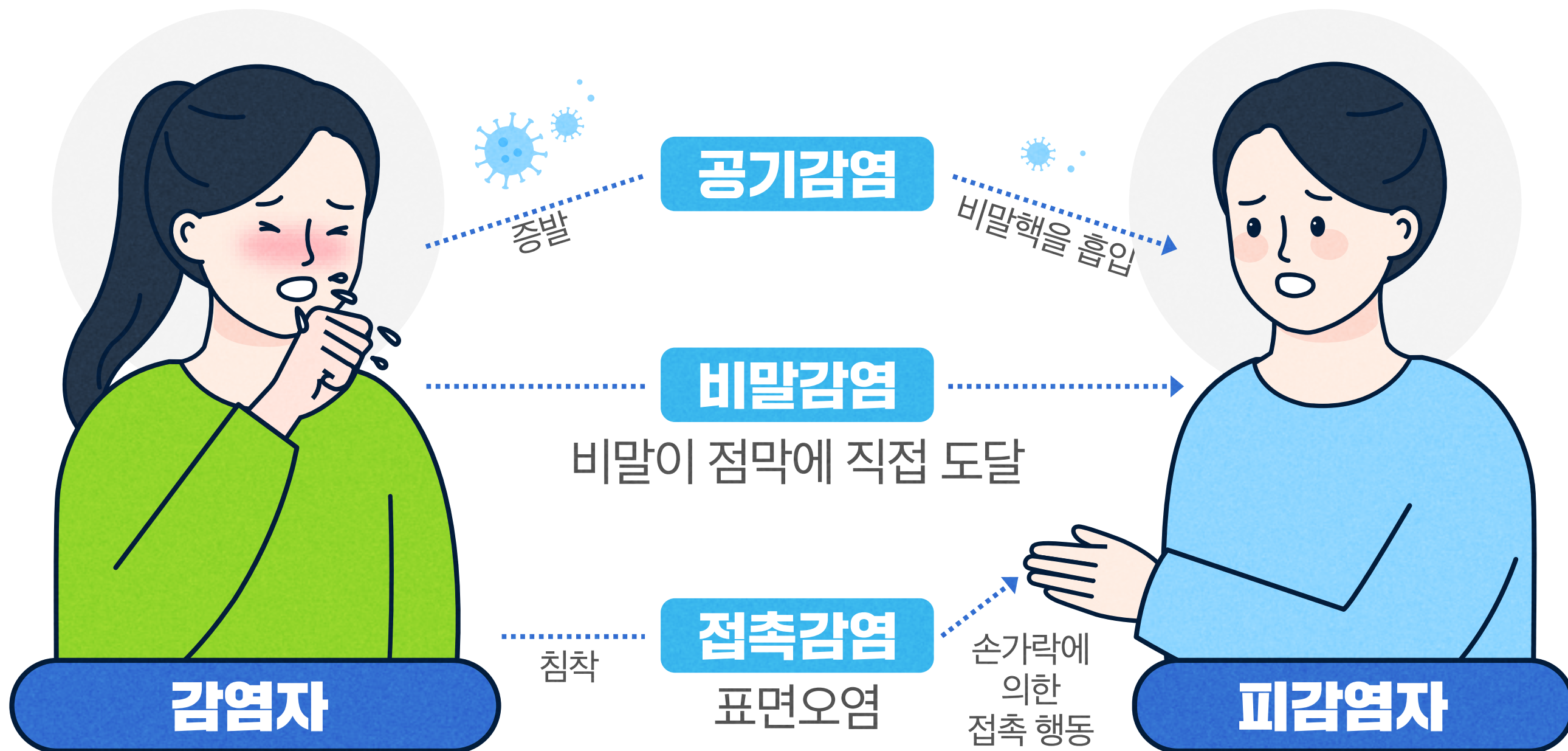
2022. 6. 22.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원칙**]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및 대응



전파경로 및 잠복기



✓ 전파경로

-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기침, 재채기, 대화, 노래 등 환기 불충분 환경 및 에어로졸 생성 시술 등 공기전파 가능

✓ 잠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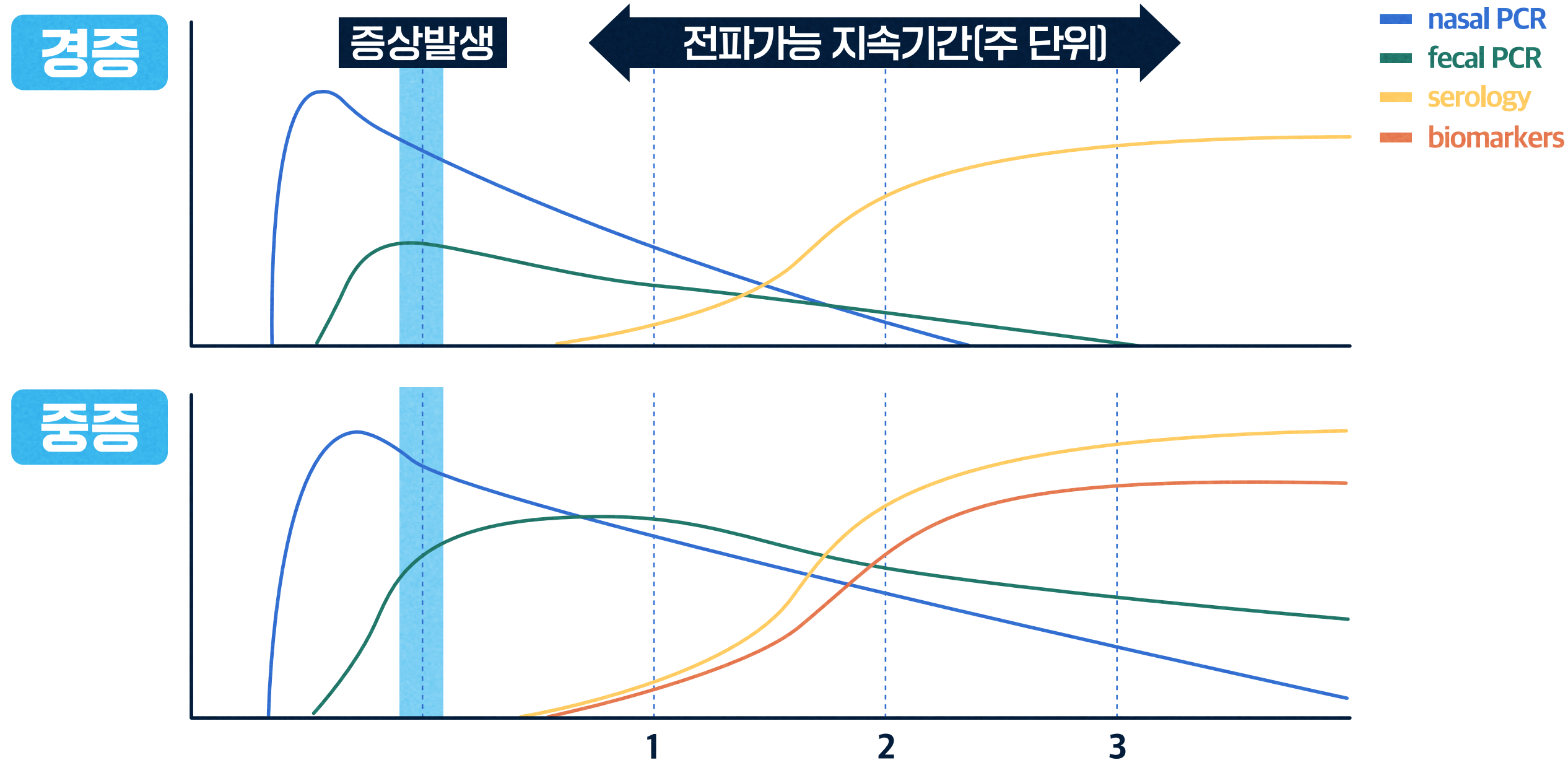
- 1~14일(평균 5~7일)



2022. 6. 22.

전염기

☑ **확진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증상발생 후 14일까지**
타인에게 코로나19 전파 가능



근거 기반 코로나19 대응

전염기 확진자의 격리 기간 설정, 접촉자 분류 활용

잠복기 격리 및 모니터링 기간 설정 시 참고
(초기 검사시 음성이어도 향후 검사 양성 가능)



2022. 6. 22.

감사·신고 절차

요양시설

· 보건소 정보공유체계 활용하여 정보 공유 및 문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또는 알림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2022. 6. 22.



질병관리청

집단발생 시 관리 목표



✓ 추가 전파 최소화

- 확진자 및 접촉자, 그 외 구성원의 생활(근무) 공간 분리
- 입소자·종사자 개인보호구 착용
- 주기적 검사 권고
(추가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함)
- 시설 환기 가이드라인 준수



✓ 중증환자 최소화

- 적정진료 체계 마련
- 증상 모니터링 : 돌봄인력, 종사자 등 담당자 지정 필요
- 처방 : 일반약제 처방, 항바이러스제 처방
- 중증환자 신속전원

집단발생 시



✓ 확진자 관리

- 비확진자와의 생활·근무 공간 분리(전원 우선 원칙)
- 증상 모니터링 : 특이증상 발생 및 악화 고려
- 증상 지속 또는 악화 시 담당의료진 진료 연계
- 돌봄인력 등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및 위생 수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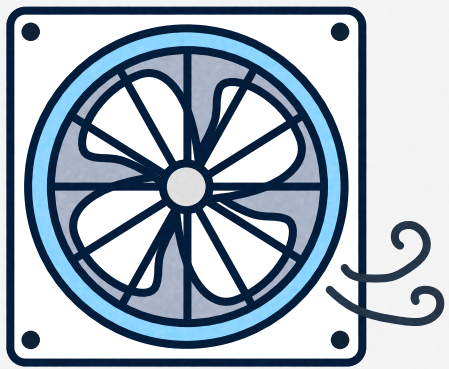
✓ 접촉자 관리

- 확진자 및 그 외 구성원과의 생활·근무 공간 분리
- 증상 모니터링 : 의심증상 발생 시 검사
- 주기적 검사 권고(추가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함)
- 돌봄인력 등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위생 수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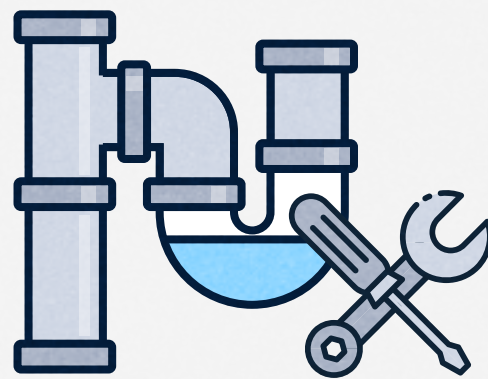


2022. 6. 22.

코로나19 대응 환기가이드라인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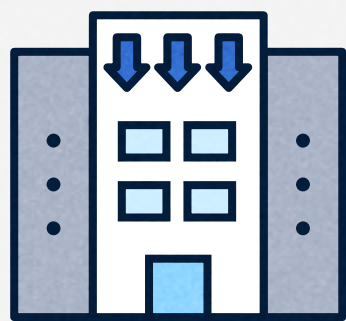
화장실팬 상시 가동



위생배관 점검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가동 및
위생배관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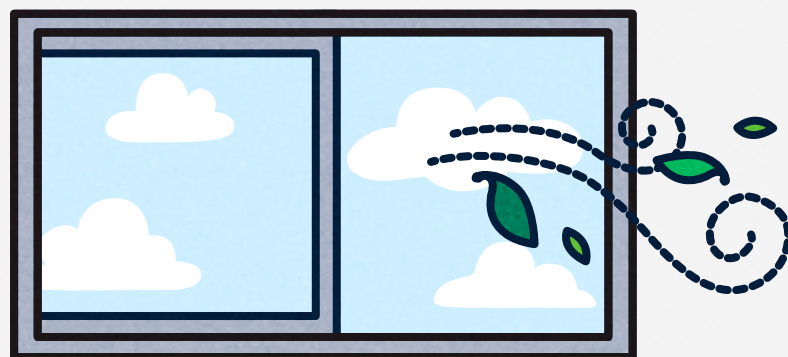
외기도입 극대화



내부순환모드 지양



환기설비
외기도입량
최대 설정



자연 환기(수시)



환기설비
없는 건물은
자연환기
수시 시행



2022. 6. 22.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원칙!
꼭 지켜주세요